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기준
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의 인증 절차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작 성 자	이름	정의서
	담당부서 (과)	청년정책팀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상희		연락처	044-202-3702
	과장	이화영		이메일	jes6773@mail.g o.kr

2025. 12. 01.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기준								
	2.규제조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3.위임법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12.10~2026.01.1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위기아동·청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 기관, 단체를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고, 그 인증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7.규제내용	○ 전문기관 인증 기준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확보, 위기아동·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를 정하고 있음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법인, 기관, 단체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법인, 기관, 단체</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법인, 기관, 단체	-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법인, 기관, 단체	-								
9.규제목표	○ 전문기관의 서비스 품질 최소 기준 확보 ○ 기관, 단체, 법인의 심사 예측가능성 및 사업 수행의 안정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인증 기준에 따라 내부 행정인력의 서류 정비, 프로그램 점검 시간 및 비용 등이 소요될 수 있으나, - 인증기준이 명확히 제시됨으로써 기관의 심사 준비와 운영이 예측가능해지고, 인증 획득 이후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지므로 규제의 비용 대비 편익이 큼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미해당						

			성격의 규제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전문기관 인증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인증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2.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조직 역량 확보 3. 위기아동·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전문기관 인증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위기 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법인·기관·단체를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법 제26조제1항)
- 현재 일부 법인·기관·단체에서 위기아동·청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관별 역량·프로그램 품질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체계화 및 서비스 확대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기관 인증을 하려는 경우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확보,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심사하여야 함을 규정
- (선택 근거) 법령 차원에서 심사영역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여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타 세부지표는 고시로 운영하여 정책환경이나 현장 수요 변화에 따른 신속한 개정이 가능토록 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입법예고 결과에 따라 보완			

3. 규제목표

-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에 대해 경영, 인력·조직, 프로그램

등 핵심 영역별 인증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전문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규제 목적의 정당성) 본 규제는 위기아동·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서비스의 최소 품질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인증의 신뢰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매우 큼.
- (수단의 적합성·비례성) 규제 내용은 인증에 필요한 역량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소만 제시하고, 세부 지표는 고시 단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규제 강도 완화
 - 인증기준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심사의 불투명성, 품질 편차 확대, 정책 신뢰도 저하 우려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목적 대비 규제 강도가 최소화되어 비례적 타당성 확보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7조,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제19조, 의료법 제58조의3 등

III.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인증 세부기준이 법률 위임에 따라 심사 판단의 틀과 최소 요건 중심으로 규정되어, 피규제기관은 요구되는 심사 영역과 품질 기대수준을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음.
- 인증 신청 준비 과정에서 심사 기준 입증을 위한 내부 서류 정비나 현황 점검이 일부 수반될 수 있으나, 이는 기관이 현재 수행 중인 정부 보조·협업 사업 신청에 통상 요구되는 자료 준비·조직 점검의 연장선으로, 추가적인 규제 대응 체계를 새로 도입해야 할 수준은 아니며, 충분히 수행 가능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위기아동청년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정책센터에서 인력 확보를 통해 인증제 운영 업무를 담당하므로, 행정적으로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위기아동청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책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므로 재정적 집행가능성 확보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5.3 제정, '26.3 시행)

2. 향후 평가계획

- 인증제 운영에 따라 보완 필요 사항 발생 시 보완 예정

3. 종합결론

- 본 규제는 이행 부담이 수용가능 수준이고, 인증의 예측가능성, 공공정책 신뢰 강화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여 도입이 타당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 단체, 법인
활동제목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기준
편익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인증제 참여의 예측가능성 확보, 이는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심사 대응 시간을 단축시켜 기관 내부 효율성 향상

☐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 단체, 법인
활동제목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기준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전문기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 단체, 법인이 인증기준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를 정리하는 시간 및 비용이 발생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기준
편익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① 서비스 품질 신뢰 향상 ○ 국가가 인증할 핵심 심사영역과 기준 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은 전문성 검증을 거친 기관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다는 정책 품질의 신뢰 증가 편익을 얻음. ② 정책 접근성 및 지원 연계 가능성 증가

	○ 인증 기준 정립은 향후 정부·지자체가 신뢰 기반으로 보조·위탁 사업을 설계·배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어, 위기아동·청년이 지역과 기관에 관계없이 연계된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직접 기회 편익으로 이어짐. ③ 정보 탐색·신청 비용 감소 ○ 국민이 기관의 전문성·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들이는 정보 탐색 시간과 검증 노력이 감소
--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의 인증 절차								
	2.규제조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3.위임법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12.10~2026.01.1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위기아동·청년법 제26조는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 기관,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인증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7.규제내용	○ 전문기관 인증을 신청하려는 법인, 기관, 단체는 인증 신청서, 자체평가 보고서, 경영계획 및 실적, 전문 인력 및 조직 역량 확보 실적, 지원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 결과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전문기관 인증을 신청하려는 법인, 기관, 단체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전문기관 인증을 신청하려는 법인, 기관, 단체</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문기관 인증을 신청하려는 법인, 기관, 단체	-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문기관 인증을 신청하려는 법인, 기관, 단체	-								
9.규제목표	전문기관 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인증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등 기관, 단체, 법인의 직접 비용은 경미하며, -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인한 전문기관의 직접편익, 질 높은 지원서비스의 확보라는 일반 국민의 편익이 비용을 상회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여부기준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전문기관의 인증 절차)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인증을 신청하려는 법인·기관·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기아동·청년 인증 자체평가 보고서 2.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경영계획 및 실적 3.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조직 역량 확보 실적 4. 위기아동·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 결과 5. 그 밖에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자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인증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위기아동청년법」 제26조는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인증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인증 절차의 부재 또는 불명확은 심사 공정성 시비, 부실기관 진입, 정책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청 절차와 필수 증빙의 범주를 규정할 필요가 제기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전문기관 인증을 신청하려는 법인, 기관, 단체는 인증 신청서, 자체평가 보고서, 경영계획 및 실적, 전문 인력 및 조직 역량 확보 실적, 프로그램 수립 및 실시 결과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선택 근거) 필수 증빙 서류의 범주는 규정하고, 기타 인증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여 규제 대응 유연성 확보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입법예고 후 보완 예정			

3. 규제목표

- 인증 신청·심사 절차의 최소 규범 틀을 마련하여 심사 공정성 확보, 기관의 준수 부담 최소화, 인증제 집행의 정당성·실효성 담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 공급 기반 조성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규제 목적의 정당성) 본 규제는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을 국가가 인증하는 과정에서 심사 공정성·투명성·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규제 수단의 적합성) 시행령은 인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기본 자료(자체평가보고서, 경영계획 및 실적, 인력·조직 역량, 프로그램 수행 결과 등)만을 규정하며, 세부 요소는 부령으로 탄력 운영하도록 위임하여, 필요 최소한의 요건만 규범화한 적절한 수단으로 설계됨.
- (규제 수단의 비례성) 제출 필요서류는 기관이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본 경영·인력·프로그램 실적 자료로 구성되어, 추가 경제적 비용 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 기관 운영 과정에서 이미 존재하는 정보의 제출이므로 부담 수준은 경미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	—

○ 타법사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8조(건강친화인증의 절차), 가족친화법 시행령 제10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피규제기관 내부 인력과 조직을 기반으로 증빙 서류, 인증신청서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고도의 기술요건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을 요구하지 않아 현실적 이행이 가능함
- 전문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 단체, 법인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규제의 순응도도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위기아동청년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정책센터에서 인력 확보를 통해 인증제 운영 업무를 담당하므로, 행정적으로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위기아동청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책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므로 재정적 집행가능성 확보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5.3 제정, '26.3 시행)

2. 향후 평가계획

- 인증제 운영에 따라 보완 필요 사항 발생 시 보완 예정

3. 종합결론

- 본 규제는 직접 이행 부담이 수용가능 수준이고, 공공정책 신뢰 강화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여 도입이 타당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 단체, 법인
활동제목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의 인증 절차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인증 신청 준비에 소요되는 내부 행정자원 투입 비용 존재 － 전문기관 인증 기준과 절차가 제도화되면, 신청기관(기업·소상공인 포함)은 인증 취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체평가, 경영계획·실적, 인력·조직 역량, 프로그램 실시 결과 등 기존 활동을 체계적으로 증빙해야 할 유인이 발생함. － 이에 따라 내부 담당 인력의 자료 정리·증빙 준비에 따른 시간 투입 등 기회비용이 발생 가능하나, 대부분의 기관이 가진 행정체계 안에서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수준에 해당하므로 직접 비용 증가 폭은 매우 낮을것으로 판단됨.

☐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 단체, 법인
활동제목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의 인증 절차
편익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심사 예측가능성 향상으로 인한 정보비용 절감 － 인증 기준이 제도화되면, 기업·소상공인은 심사 항목과 판단 기준 틀을 미리 알 수 있어 심사 대응 전략 설계 시간 감소, 불필요한 추가 준비·정보 탐색 비용 절감, 심사 불확실성 감소로 인한 행정 리스크 비용 감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 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의 인증 절차
편의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인증 기준 및 절차 마련으로 인한 신뢰 확보) 전문기관 인증 기준 및 절차 마련에 따라 전문기관 지원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 가능 ○ (심사 분쟁·지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인증 심사 절차가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분쟁, 심사 지연으로 인한 지원 서비스 공백 피해 등이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될 수 있으나, 본 규제로 해당 사회적 비용을 국민이 부담할 가능성이 감소